

## ■ 표현의 자유 관련 글 묶음 2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민족예술』 1997.10)
  - 표현의 자유와 자유주의(강내희)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조광희)
  - 문화생산자가 본 표현의 자유(김수정)
  -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김혜준, 방민호, 김형준, 김보성)
  
- 심의·검열의 뜨거운 공방, 그 끝은 어디인가?(『세상열기』)
  - 심의·검열의 현주소와 과제(김기태)
  - 전근대적 문화공안정국, 90년대적 현실을 배워라(류미래)
  - 인터뷰; 손봉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희재 만화가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문
  -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정(1996.10)  
91헌바10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정  
(1996.10)
  -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판결  
(1992.6)

기억특성 / 심의 검열의 뜨거운 공방, 그 끝은 어디인가?

# 심의 검열의 현주소와 과제

◎ 김기태 / 서강 방송아카데미 교수. 언론학 박사



## 1. 표현의 자유와 책임, 그 끝없는 공방

오늘의 심의에 관한 논란을 그 지루한(?) 표현의 자유와 책임 공방으로 규정할 생각은 없다. 설령 결국은 모든 심의문제가 그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지칫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쉽게 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는 무한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보아 막중한 책임의식도 마땅히 지녀야 한다는 따위의 결론은 이미 아무런 해답도 줄 수 없는 빛바랜 명구(名句)일 뿐이다.

오히려 자유와 책임 가운데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게 훨씬 유용한 해결책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른바 음란만화에 대한 규제가 현재 활동중인 작가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오늘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 검열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개념적으로 설명한다거나 심의행위의 폐지와 고수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명확한 선언을 하는 따위의 행위도 사실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의 매체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매체심의기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 2. 한국매체심의의 현주소

우리나라 매체심의는 각 매체별 심의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메시지도 서로 다른 심의기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의 경우는 공표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수도 있다. 심의규정이나 절차는 심의기구들이 대체로 비슷한데 주로 '음란성', '폭력성', '불온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이외에도 '비교육성', '몰가치성', '외래지향성', '허위성', '편파성', '불공정거래성' 등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매체별 심의기구와 심의절차를 개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방송심의위원회

현재 우리나라 공중파방송 프로그램 심의는 방송위원회 산하 4개의 장르별 프로그램 심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도교양심의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 영화심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 등이 그것인데 이 중 영화와 광고심의회는 사전심의 그리고 나머지 장르의 프로그램은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2) 종합유선방송심의위원회

종합유선방송 즉 다채널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심의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산하 5개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1심의위원회 : 보도, 교양, 교육, 어린이, 종교, 지역채널 관련 프로그램
- (2) 제2심의위원회 : 오락, 여성, 교통관광, 스포츠, 비독, 만화채널 관련 프로그램
- (3) 제3심의위원회 : 국내의 제작 극영화 및 영화관련 프로그램
- (4) 제4심의위원회 : 광고, 홈쇼핑 관련 프로그램
- (5) 제5심의위원회 : 음악,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방송위원회와 함께 현재 공보처 소관 기구로 속해있다.

## 3) 공연윤리위원회

영화, 비디오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공연물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관영적 기구형태와 운용이 문제가 되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헌판결을 법제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게 일반적인 평이라 하겠다.

## 4) 간행물윤리위원회

각종 인쇄출판물을 규제하는 기구로서 도서,잡지,만화 등을 사후심의하는 기관이다. 원

칙적으로 완전한 사후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간행물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를 가지고 직접 통제를 가할 수는 없으나 이미 발간된 뒤이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주의' 등 여러 가지 경고를 줄 수는 있게 되어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문화체육부에 등록허가 취소를 건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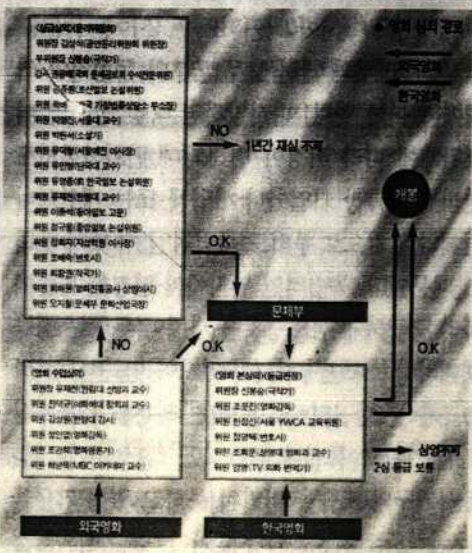
현재 공연윤리위원회와 함께 문화체육부 관할권 아래 있다.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법적으로는 독립기관화된 위상을 지니고 있으나 사실상은 정보통신부 산하 기구라고 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컴퓨터 통신을 규제하는 비음성정보 심의와 전화사업자를 규제하는 음성정보 심의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회선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여부에 대한 공방이 가장 뜨거운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광고자율심의기구

물론 모든 매체별 심의기구에서도 광고심의



영화심의경로

는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 및 케이블TV의 경우는 철저한 사전광고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이런 사전광고심의제도가 타율적 규제장치로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업계 스스로 광고제의 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심의기구를 결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기구는 어떤 강제적 규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 매체심의의 자율심의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금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매체심의는 3개부처의 관할 아래 5개 심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셈이며 여기에 광고자율심의기구가 스스로 심의에 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중 광고자율심의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적인 타율심의기구라는 점에서 매체심의의 자율화라는 대명제에도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 3. 매체심의기구의 기본 지향방향

#### 가. 독립성

먼저, 정부와 개인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상이 변하거나 편향되어서도 안되지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입김으로부터도 독립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행위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는 있으나 명목상으로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관련 정부부처나 예산 지원 기관의 통제아래에 있곤 하던 과거 많은 유사기구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구들이 아직도 적지않은게 현실이다. 특히 심의규정

중 이른바 내용상의 불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도 심의심상 정부 관련부처나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4제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특정 업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도 철저히 독립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규범의 자유로운 표출을 허용하고 있는 사회인 만큼 다양한 이념과 가치, 규범에 원칙없이 기울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 나. 자율성

다음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실질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향형 또는 이념형으로의 독립성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율성은 심의기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자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율성 확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심의업무의 일정부분을 시민단체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는 절충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사업 및 예산 수립 과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자율성 확보는 재론 할 여지도 없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다. 도덕성

또한, 심의기구는 다른 어떤 형태의 법정 기관이나 기구보다도 높은 도덕성 확보를 통해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각종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부터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이르기 까지 심의기구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

심의기구는 매체 내용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도덕적 신뢰성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수행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1. 전문성

급변하는 신기술 매체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미, 취향, 방식이나 원칙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유지도 내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관련기술의 급격한 고도화는 매체 자체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길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까지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일은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문성이 부족한 기구나 기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의 일처리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합리성

한편, 심의란 결국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부터 각종 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완벽한 객관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해당 사업자나 개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바. 신속성

전반적인 일처리나 최신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정리 과정에서의 신속성 추구도 심의기구의 중요한 지향과제이다. 관련 신기술매체의 발

전 속도나 내용상의 변화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는 제대로 된 심의기구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각종 매체심의기구란 무엇보다도 절차적인 권위 뿐만 아니라 심의내용에 대한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권위는 앞에서 제시한 독립성, 자율성, 도덕성,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 등이 모두 보장되고 발휘될 때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 4. 맺음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완전한 매체자율화이다. 어떤 형태의 심의나 검열행위 없이 무한한 자유 속에서 마음껏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방종한 매체의 타락과 파괴 또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개인과 사회를 위협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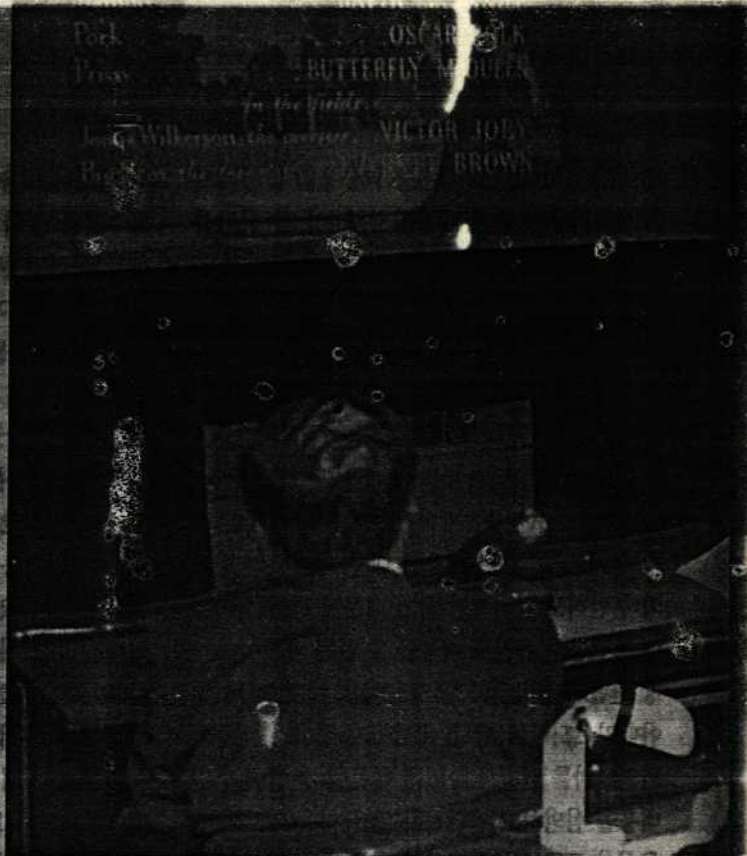
결국 문제는 제도에 있는게 아니고 운용에 있는 셈이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 공방의 부질없는 논쟁보다는 넘치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과 남용되지 않는 책임추궁 사이의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부분삭제를 해야했던 정선우 감독의 나쁜영화



## 기획특집 / 심의·검열의 뜨거운 공방, 그 끝은 어디인가?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현재 뜨겁게 공방중인 심의·검열에 대한 각 윤리위원회에 대한 공식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실을 예정이었으나, 청탁이 여의치 않게 되어 부득이하게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몇가지 입장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회원들의 양해를 바란다-편집자 주

### 등급심사 민간중심 협의회 신설-국회문화체육공보위

국회 문화체육공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등급의 영화용 성인전용관 허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여당안을 가결, 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지나친 음란성과 폭력성 등으로 등급의 판정이 난 영화의 전용관을

따로 두지 않고 상영을 금지시켜 6개월안에 제작자가 자진폐기하든지 내용을 수정,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영등급을 받지 못한 영화나 상영등급을 위반 또는 변조해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상영금지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포르노그래피 규제방안이란  
신문을 통해 포르노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없  
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무분별  
한 접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성박사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기준을 설정, 추출해낸  
포르노 사이트는 99개. 이중  
전체의 52.7%에 달하는 49개  
사이트가 섹스·음은 물론 사  
람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한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음란의설 정보  
제공사이트는 관련 사이트들간  
서로 광고를 통해 연결돼 있  
어 한번 접속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갖  
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이 남녀의 성기노출은  
물론 성교장면까지 보여 주고 있으며, 섹스관  
련 상품등 상업화하는 사이트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조사대상 99개 사이트중 의설사진만  
을 보여주는 곳은 전체의 28.3%인 28개소이  
며 상품판매를 하는 곳도 10.1%에 달하는 10  
여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성박사는 인터넷 사용자운동을 통  
해 음란의설 정보의 접속을 막아주는 차단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란정보 차단소프트웨어로는 'sex'  
'porno' 등의 단어가 들어있는 사이트접속을  
차단해주는 넷내니(Net nanny), 마이크로시스  
템사의 사이버패트롤, 서프위치사의 '서프위  
치' 등이 개발돼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초 임기

개정안은 영화 등급심사를 위해 종전의 공연  
윤리위 대신 영화업 종사자와 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를 구  
성토록 하고 공연법의 관련조항도 개정했다.

공연윤리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로부  
터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화등급에 대해 개정안은 ▲모든 관람객 관  
람가 ▲12세 미만 관람 불가 ▲15세미만 관람  
불가 ▲18세미만 관람불가 등 4등급으로 나누  
고 지나친 음란물 등은 등급심사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사실 상 5등급제를 채택했다.

#### "인터넷 음란정보 규제법 시급" -언론정보원

최근 사이버홍등가로 불리는 인터넷의 음  
란·의설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  
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 제정이 시  
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등장했다.

언론연구원 성동규(35)박사는 최근 '인터넷

하  
어 부득  
회

의안에 제  
의를

상영  
영화에 대  
적지 등  
정지

가 만료되는 정보통신윤리위(위원장 손봉호)위원의 시민단체, 청소년 교육기관 등 사회 각 계 각층의 대표로 임기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음란」 판정 소설 70% 외국번역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돈주앙」 「추억의 여인」 등 선정성 극치/장기불황 출판업계 한탕주의가 주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소설 가운데 국내작가 작품보다는 외국작가 작품의 음란성과 선정성이 훨씬 지나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이하 간행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음란간행물로 판정받은 소설중 70% 이상이 외국작가의 작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작가의 창작물이 부족, 번역이 손쉬운 외국출판물에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들어 음란소설들이 전례없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출판계가 음란소설을 통해 출판불황을 극복하려는 자 구책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음란소설의 극성은 과거에 도 그랬던 것처럼 「성개방」과 맞물려 한탕(?)하려는 출판업주의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수음·동성애 등이 문제가 된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지난해 음란성이 강한 도서로 판정받은 음란소설의 작가는 미국작가 프랭크 헤리소와 아다이스 뉴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작가 알리시아 스테임베르그, 일본작가 도미시와 다케오와 기쿠치 시대유키, 프랑스시인 아폴리네르 등이 손꼽힌다. 이와함께 국내 출판사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의 성애소설을 이곳저곳 짜집기해 출판한 경우도 있으며, 국외 작가로는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장정일씨가 유일하다. 번역된 외국 음란소설은 △주제 자체가 성희를 추구하고 △추리 괴기소설의 형식을 띠어 주제와는 상관없이 성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외국소설의 음란성 장면만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게 특징. 그러나 음란소설만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전문출판사나 작가는 없고 대부분 「한탕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프랑스 시인 아폴리네르가 쓴 성애소설 「완역 돈주앙」(보라간)은 주인공 돈주앙을 비롯해 하녀 귀부인 소년 소녀등과 나누는 성체험과 갖은 음행을 다룬 소설. 4명의 남녀가 혼음을 하다가 그 중 한 여자를 목졸라 죽인후 시간을 함으로써 성적쾌감을 얻는 장면 등이 나온다. 또 「추억의 여인」(빈양사 간)은 그동안 여러차례 출판된 바 있는 일본작가 도미시마 다케오의 성애소설을 재출간한 것으로 남자 주인공의 유년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의 난잡한 성체험을 다 루고 있다. 즉 주인공이 여선생과 여자친구와 혼음을 벌이거나 하숙집 유부녀, 선배의 약혼녀, 사촌 누나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기쿠치 시대유키의 「마계록」(문학풍경간), 알리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아마티스타」(열음사 간), 시드니 셸던의 「사랑의 모든 것들」(유원미디어 간), 수잔 크레이그 베이콕스의 「변태」(가서원 간) 등도 패륜적이고 부도덕한 성관계가 주축을 이루기는 마찬가지다. 간행물위원회 한 심의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10대들이 제작·출현하여 문제가 된 '공간마우라'

하드코어를 표방한 포르노물은 정면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위의 소설들은 하드 코어 포르노에 거의 근접하는 내용'이라면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도서유통망을 통해 청소년과 대중에게 소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PC통신 음란물 추방 네티즌이 직접 나선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포르노 등 게시·유통 감시 자원봉사대 발족 심각한 지경에 이른 PC통신 및 인터넷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통신회사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가상공간의 음란물 범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이 세계적으로 모색되는 추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가 지난달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 윤리캠페인 행사를 가진 것도 온라인 음란정보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통신윤리확립운동은 ▶언론기관 및 이용자단체등을 통한 음란정보추방캠페인 ▶주부·교사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PC통신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음란물 모니터링 자원봉사 활동. 윤리위는 "불건전한 통신이 특히 청소년의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면서 "가상공간의 음란물 퇴치에 위력을 발휘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컴퓨터의 음란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SW)이 하반기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전산원의 홈페이지, PC통신망의 공개자료실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 사업은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이 맡는다.

손위원장은 "2년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될때 시기상조다"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등 일부 이용자들의 반발여론이 있었으나 이제 누구나 그 존재가치를 인정할 만큼 음란물 유통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손위원장은 "통신문화가 깨끗해지면 정보통신윤리위 같은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며 "하루 속히 해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은 지난해 성관련 사이트 1천여개 가운데 53%가 포르노일 정도의 위험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PC통신에서 도 지난해 음란물 게시 및 매매·교환 건수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 만도 5천건에 달해 온라인 정보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불건전 정보 감시 「파수꾼」 등장-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http://www.icec.or.kr>)를 개설, 6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윤리위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원회에 대한 일반정보를 담은 코너와 게시판, 자료실 등으로 꾸며졌다.

게시판에는 위원회의 최근 활동사례를 소개하는 윤리위소식, 외국의 인터넷 불건전정보 규제상황 등을 담은 해외동향, 자료실, 토론실 등이 개설돼 있다.

자료실은 불건전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각종 통신용 소프트웨어를 올려놓은 공개자료실, 선진국 정보통신윤리연구원의 활동상황과 인터넷윤리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모아놓은 추천사이트 등으로 구성됐다.

윤리위는 「그동안 천리안 등 PC통신망에는 「불건전 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인터넷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할 장소를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이용자의 정보통신윤리를 제고시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PC통신 음란대화방 위험수위/정보통신윤리위원회

최근 PC통신의 대화방을 통한 음란대화가 증가, 통신초보자나 청소년들에게 적지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최근 각 통신망에서 운영하는 불건전정보신고센터(go eco)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내용 중 대화방과 관련된 것이 전체 2천325건 중 1천

197건으로 51.5%나 돼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PC통신 대화방의 불건전 정보유통 유형은 대부분 개인을 비방하는 욕설이나 아무 의미없이 내뱉는 욕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음란대화도 285건(11.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는 PC통신 대화방의 주이용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화방이 비공개 및 비밀대화

방으로 운영될 때 대화 내용을 볼 수 없고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음란대화방이 개설되고 있어 PC통신업체의 자체 관리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측은 대화방내 불건전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만들기 위해 채택 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유도, 야간 대화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해동안 접



경찰에 압수된 음란도서들

수된 불건전한 비음성정보 신고건수는 PC통신 업체별로 하이날 3천462건, 나우누리 1천769건, 천리안 362건, 유니텔 99건 등 모두 5천656건이며 조치건수는 ID정지가 504건, ID경고 1천11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가 지난해 고교생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통신윤리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17%가 전화 음성정보서비스를 통해 음란성있는 정보를 청취했으며 14.9%는 PC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

# 전근대적 문화공안정국, 90년대적 현실을 배우라 검열에의 저항-억압의 드러내기

◎ 류미례 / 월간 「민족예술」 기자

**작**년 6월 7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반의 사전심의를 폐지하였고 음악인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축제를 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푸른영상의 김동원 감독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강제 소환된다. <자유>의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6월 14일의 일이었다. 항의집회가 줄을 이었고 검열철폐기금마련을 위한 맷지 판매, 대안적인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기나긴 투쟁... 그리고 10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심의기관이 허가 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영화법 사전심의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56년 동안 영화를 묶어왔던 족쇄가 풀린 것에 대해 영화인들은 명동성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파업전야>를 상영하며 승리를 자축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한편에서 청소년보호법률안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고 있던 만화가들 또한.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검열'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구속,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입 불가 판정, <나쁜 영화> 등급부여 보류 판정, 삭제 후 상영, <천국의 신화>를 그린 이현세씨(만화가) 음란문서 제조



등의 혐의로 소환... 포스트모던을 운운하고 근대성에 대한 재고찰이 이루어지는 한 쪽에서 우리는 중세의 암흑을 느낀다. <빨간 마후라>로 의욕에 불탄 검찰, 만화로 영화로 그 화살을 돌리며 멋대로 작품을, 예술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 여전한 족쇄와 기위손

검열이라는 말을 들으면 섬뜩함이 느껴진다. 삶은, 혹은 예술은 색의 총체인데 검열은 웬지 한 색깔로 염색해버리는 것 같아서이다. 한 사회의 진보는 존재하는 색깔 만큼의 '다양성' 보장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라면 우리는 한걸음, 단지 한걸음만 나아가 있다. 사전심의 폐지는 언론, 출판, 학술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연극 등 공연도 84년 연우무대의 <나의 살던 고향>이 제재를 받은 이후 사실상 100%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유명무실해

진 상황이다. 그러나 음비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사전심의 규정에서, 혹은 등급의 전용관을 설치하지 않아 상영등급을 받지 않은 작품을 상영할 수 없는 개정 영화진흥법에서 우리는 여전히 창작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느낄 수 있다. 안방극장을 대체하는 동네의 비디오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화를 접할 수 있는가. 또한 <어공룡들리>나 <은비끼비의 옛날이야기>와 같은 TV만화들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즐길 수 있는 가장 친숙한 매체가 아닌가.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영화진흥법(영진법)의 개정을 주장해왔던 영화인들은 헌재 결정 이후에 '영화진흥법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영화인 298명이 성명을 내는 등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왔다. 그들은 완전등급제 실시, 등급의 전용관 설치, 시민단체의 영화심의에 관한 의견제시 통로 마련, 유통배급업 도입을 통한 비공식 부문 자본의 양성화 등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개정 영진법은 상영등급을 연소자 관람가, 12세 미만 관람불가, 12세 미만 호보자 동반 관람가, 15세 미만 관람불가,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 5단계로 나누었고 등급의 전용관은 명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된 영화는 6개월간 상영이 보류되며 기간 안에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문제장면을 삭제할 경우에만 재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만화의 경우 매체물이 최초로 유통되기 전에 심의·결정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개정 영진법에 의해 올해만 해도 <나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의 대통령에 대한 농담 장면, <나쁜 영화>의 윤간, 오컬트 섹스,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의 구타, 윤간 뒤 구타로 기절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제작자가 자진삭제를 한 이후에야 극장에 걸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폐지된 공권윤리위원회 대신 새로이 그 역할을 맡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에서 내린다. 그들은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적 외교질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등을 훼손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은 판정기준으로 제작된 영화를 돌려보낸다.

비디오는 영화와 같은 개념이면서도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음반과 함께 동호인들이 만드는 것을 포함한 모든 비상업적 비디오까지 일률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제도, 미등록업자가 제작한 비디오의 상영, 판매 등 유통에 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형·단편영화와 영화제 참가 영화에 대한 심의등급 예외 조항'이 개정 영진법 시행령 안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벌써 <제2회 인디포럼>, <제2회 다큐멘터리 영상제>, <제1회 시민영화축제> 등이 심의의 망령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9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2회 인권영화제> 또한 '심의받지 않은 작품은 상영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대관예정이었던 장소가 취소되고 있다. 이는 비디오매체를 비롯한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할 수 있다.

만화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그 2장 8조 5항에 '만화의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이 최초로 유통되기 전에 심의·결정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작품을 수록한 개별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면, 그 매체물에 대해 납본·표시의무·포장의무·판매금지·구분격리·광고선전 제한 등의 금지·의무사항을 법률로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보호권이 만화탄압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만화가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구속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의 첫 사업은 불법폭력만화 1백50만부를 검점과 대본소에서 압수하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만화가 불법복제한 일본만화라서 안심하기는 일렀다. 검찰은 곧이어 『천국의 신화』를 포도로 규정하고 이현세씨를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빨간 마후라>를 비롯한 몇가지 충격적인 만화들의 원인을 만화로 돌리는 것이다. 문학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올초 검찰은 『내게 첫말을 해봐』를 음란물로 규정하고 작가 장정일을 진격 구속하였다. 사실 '음란'의 개념이나 정의에 관해서는 형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법원의 판례로 '음란'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미루어 규정하는 것이다. 92년 겨울,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공판 때 한승헌 변호사는 "재판부 여러분께서 '즐거운 사라'를 읽고 성적으로 흥분하시면 유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될 것입니다. 법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사실 인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변론을 했다. 웃음이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게 검열의 갈날이 휘둘러지고 그 속에서 이 땅의 예술가들이 자기 검열과 피해의식에 창작욕구를 잃어가 버릴 병들어 간다.

### 예술에 자유를

현시기 우리는 두 개의 자유 사이에서 위태로

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심의의 자유이다. 그러나 심의가 국가권력의 폭력적의 개입은 적멸



문제는 달라진다. 올초의 장정일 사건에 즈음하여 문단의 중견시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물었다. 그 시인은 "장정일의 책에는 섹스에 대한 묘사가 한 페이지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작품이 나오자 문단의 일각에서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끼어들면서부터 모든 문학인들은 국가권력의 개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라고 말한다. 작품에 대한 입장과 탄압에 대한 입장은 별개의 것이며 작품에 대한 평가로 장정일 사태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볼테르의 말과도 일치한다.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행하는 '검열'의 밑바탕에는 엘리트주의의 오만이 깔려있다. 영화든, 문학이든, 만화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예술작품을 접하게 되는 동기가 도덕적 판단이든 호기심이든 또 그 호기심이 지적 호기심이든 말초적 호기심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 검열관들의 대리판단이 아니어도 대중은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일상적인 판단에 의해 이 사회는 움직인다. 또한 각 장르에는 전문가라는 이름의 일군의 무리가 있어 작품의 향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나의 예술작품의 생산에서 향유, 재생산까지는 이렇게 다

양한 층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복잡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순환되는 예술계의 흐름을 권력을 쥔 일군의 우리가 '검열'의 칼날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극히 권위적이고 장교노릇이며 이중적인 인간 권으로 말이다. '검열'과 관련하여 믿을 수 없는 예가 하나 있는데 최근 「천국의 신화」를 담당한 검찰의 결재라인 중 담당검사 외에 이현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검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한겨레』 21. 1. 169호 중)

또한 '검열'의 주체들이 영화나 만화를 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일일감독 체험을 한 만화가 장태산씨는 "구두담이를 하는 가난한 고학생의 집이 양옥집이다. 왜 그런가 하고 선생님께 물었더니 선생님께서서는 심의실에서 '서울의 못사는 가난함을 알려서는 안된다' 라는 강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었다며 씩씩히 웃으셨다"며 문화생지절에 보았던 여처구니 없는 심의의 예를 말해 준다. <나쁜 영화>의 장선우감독은 선도위원회 의 구타나 상가 화장실에서의 오럴 섹스 장면은 어른들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장면들 또한 선정적이라서 잘렸다. 이러한 심의의 단순함에 대해 만화사전 심의에 반대하는 통신인들은 그 성명서에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말은 청소년은 부엌에서 식칼로 요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범죄를 배울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히며 표현자유를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검열'을 둘러싼 긴 싸움을 겪은 예술인들은 검열판들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화가들은 검찰의 이현제씨등 만화가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스포츠신문 '진재만화' 작가에 대한 사법처리에 항의하는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사랑 범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고 영화인들 또한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영진법 시행령 확정안 발표에 즈음해서 문화체육부를 항의방문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민예총, 민교협, 민변, 지식인연대, NCC,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등이 공동주최하는 문화예술 검열반대를 위한 대토론회 '(가칭)우리사회의 문화적 자유는 있는가'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길은 멀고 험하다. 검열의 같은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만 꺾을 수 있으며 그 싸움은 예술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빼앗긴 작가들의 펜은, 필름은 동시대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문화인 것이다. "우리에게 작가들을 돌려달라"는 외침은 "우리가 누릴 문화를 뺏지 달라"는 외침에 다름 아니다. ■



신문과 윤리가 통하는 정보통신 사회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추구하면서 PC를 통한 정보통신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폐쇄된 환경이 낳은 부정적 측면도 목격할 수 없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심의의 여파가 책상앞 PC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PC를 활발하고 다니는 유해환경에서 비롯된 각계의 우려스런 목소리로 나타나 출발된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94년 4월에 발족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다. 위원회는 청소년, 문화, 언론, 교육,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뜻을 모아 정보통신의 건전한 활용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힘주어 3년째를 맞은 위원회는 전화 정보를 비롯해 PC통신, 인터넷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곳의 책임을 맡고있는 손봉호 위원장을 만나봤다.>

-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아마도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다. 위원회가 처음 발족하게 된 계기는 PC통신을 이용하다 보니 대화방 등에서 욕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내용 등을 건전한 방향으로 계도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다. 현재 정보통신상에서 비윤리적이고 상식을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건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한총련 문제와 앞으로 대선을 맞으며 통신상의 정치적 공방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에서는 정치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물론 미풍 상속과 건전한 상식을 넘어서는 개인에 대한 인격적 비방은 심의를 하지만 정치적 문제 대해서는 검찰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오겠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는 자료협조만을 할 뿐 그밖의 문제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선관위에서 처리할 문제다.

-한때 전화방, 음성사서함에 대한 음란성 여부로 공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현재는 비교적 건전화되어있는 편이다. 일본같은 경우는 통신회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음란화를 꾀하면서 심각한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시나리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사업자들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검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에 위원회를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때

문에 사업자들은 음란성을 피하는 일정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화되어가는 방향이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음란성에 대한 시비는 PC통신상에서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는.

=PC통신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어서 음란성에 대한 시비는 물론 많은 범죄도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협조해주는 내용도 많고 자체에서도 음란정보나 범죄행위를 추적해서 경찰에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동호회의 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중 인터넷의 유해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인터넷의 경우는 국내 통신망에서 통제를 하더라도 우회해서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 개인의 정보통신 이용권을 침해하면서 사이트를 강제로 차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전산원에 의뢰해 NCA Patrol 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것을 PC에 입력하면 음란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이용권에 대한 시비를 일소하면서도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의 정보이용시 언어, 시간, 검색에 의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만약 차단할 단어중 sex라는 것이 입력되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한 사이트는 사전에 차단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글화로 프로그램이 되어있어 부모들의 손쉬운 장치가 가능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는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9월1일부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갖는 목표가 있다면.

=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위원회가 없어도 될만큼 정보통신 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화되어 건전한 정보문화와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윤리적 규범이 확립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설 BBS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삽들과의 모임을 확대해가면서 각 책임자들이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끝으로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먼저 NCA Patrol를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것이 있겠다. 또한 이것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청소년을 계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그래서 정보통신상의 윤리와 관련한 내용을 교재로 제작해 각 교육기관에 보급해 청소년의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혹은 각 시민단체와 공조를 유지하면서 공공 통신망의 건전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예술은 표현의 자유가 생명이다



〈문화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심의·검열의 공방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만화와 만화가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만화가에 대한 기소와 만화책의 압수등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만화연대모임 이사로서 있는 만화가 이희재 씨를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의·검열에 대한 만화계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희재 씨의 천국의 신화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이라는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이에 따라 만화에 대한 심의·검열에 반대하는 만화계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었는데 만화에 대한 심의·검열 문제가 왜 갑자기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빨간마후라 사건과 청소년 폭력 조직인 '일지매'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실 청소년 문제는 대사회적인 문제이다. 우리 교육이 대학 입시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제 각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취급을 받다 보니 이들이 청소년 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만화 등 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검찰의 과도한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본다. 만화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제스처의 하나로밖에 볼 수 없다.

-만화는 그동안 어떻게 심의·검열을 받아 왔는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통치 권력의 통제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문화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심의·검열이 가장 심했던 70년대에는 두 남매가 한 방에서 자는 장면을 그려서도 안되었다. 70년 당시는 가난하고 못살던 시절이라 남매가 각 방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되지 않는 사항이었다. 또 절대로 사투리를 쓸 수도 없었다. 권투 시합 묘사도 3쪽을 넘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그럼 상에 주먹이 신체에 닿아서도 안된다. 이 모두가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만화는 이러다 보니 순치 되어 갈 수밖에 없었고 계몽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고 만화 본연의 활력을 잃게 되고 말았다. 만화는 자유분방한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다이내믹하고 과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화에 대한 심의·검열이 30여년이 넘도록 있어 오히려 우리 만화가들은 이것에 대한 부정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심의·검열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끔찍한 일이다. 우리 만화가들이 머리에는 늘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심의·검열로 무슨 창의력이 생겨날 수가 있었겠는가.

-민족의 심의·검열이 우리 만화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같은데.

=창작의 자유와 억압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역기능을 자초했다. 예술은 바로 표현의 자유가 생명이다. 이 표현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참다운 창조가 가능하다. 만화를 천시하는 분위기와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역량 있는 만화가들이 만화계를 떠나기 버렸다.

또한 만화에 대한 심의·검열 바람으로 인해 한 달만에 만화 시장의 1/5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이 1점들에 있던 만화 코너를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만화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말뿐인 셈이다.

일본의 대표적 만화 미래소년 코난이 전쟁 후 실의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 일으켜 국익을 이바지했듯이 우리 만화 역시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일으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21세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개인의 창조력이 산업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만화의 심의·검열은 없어져야 한다.

만화도 예술이다. 만화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만화도 문화의 꽃이다. 만화도 문화의 향기이다.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만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다소 문제가 있는 만화도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상업성만을 쫓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만화가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공권력의 힘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만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자체 차정 능력은 있다고 본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럴 때 만화의 발전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만화는 10배 이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성범죄의 통계는 우리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매체로 인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책은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엄밀하게는 유통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만화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결국 성인 문화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심의·검열에 대한 만화계의 대응 방안과 입장은

=먼저 자체의 반성과 성찰을 기본으로 심의·검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현재는 '창작표현의 자유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권영섭, 이두호)가 꾸려져 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권력에 의한 창작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갈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만화가들이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 뿐만 아니라 스포츠 신문에 만화를 게재하고 있는 모든 만화인들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처구니없이 대부분의 만화가들이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건의, 만화의 심의·검열 조항을 없애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음반, 영화 부분에 심의를 폐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화에 대한 심의·검열이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싸워 나갈 것이다.

이희재 / 52년생, 우리만화연대모임 이사

어린이 만화 '막동이',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성인만화로 '간판스타' 등 집필

이 키 코신		
등		
98 5/12	B7	63

특집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작가 장정일 구속,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입불가 판정, 〈나쁜 영화〉 삭제 후 상영, 『천국의 신화』를 그린 만화가 이현세씨 음란 문서 제조 혐의로 소환, 통신상의 ID삭제·CUG 폐쇄 등 모든 문화매체에서 검열의 칼날이 춤추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는 이러한 검열의 탄압에 개별적으로만 대응해왔던 제 단체들이 모여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을 포함한 각 부문·장르 13개 단체가 모여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월간 『민족예술』 편집실에서는 이 날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실는다

- ▶ 표현의 자유와 신자유주의 / 강내희
-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 조광희
- ▶ 문화생산자가 본 표현의 자유 / 김수정
- ▶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김혜준, 방민호  
김형준, 김보성

특집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1

# ‘표현의 자유’와 신자유주의

강 내 회

중앙대 영문과 교수

## 국면의 성격?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 활동들에 대해 체계적이다 싶은 검열과 탄압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작년에는 소설가 장정일과 김하기가 입건 또는 구속되더니, 두어달 전부터는 음란폭력성 만화를 심는다고 일간 스포츠지 관련자를 고발하다가 급기야는 <빨간 마후라> 사건을 계기로 <나쁜 영화>의 일부 장면들을 잘라내고, 『천국의 신화』를 만든 만화가 이현세를 입건하는 등 검열과 탄압이 문화예술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 탄압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이 아니다. 문학계에서 『자유부인』의 정비석, 『분지』의 남정현, 『반노』의 염재만 이외에 김지하, 고은, 한수산 등 많은 작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입건, 구금, 구속, 기소, 혹은 투옥의 형태로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고, 미술계에서 신학철이 기소되거나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홍성담 등 그 소속 화가 십수명이 구속되어 형을 집행받은 바 있고, 영화계에서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를 제작한 영화인들도 탄압 받은 적이 있으며, 음악계에서도 왜색이나 대마초 흡연 등의 이유로 이미지, 신중현, 송창식, 조용필 등 많은 대중가수들이 판금조치 당한 적이 있고 정태춘이 오랫동안 투쟁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시인 박노해와 진관, 소설가 황석영과 김하기 등 문인들은 감옥에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탄압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왜색, 퇴폐, 음

란 등 ‘미풍양속’ 위해와 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 문란이 발미가 되어 진행된 적도 적지 않았으나, 그래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정치사상적 이유가 더 큰 작용을 한 편이었다. 예술가들이 걸핏하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느니, 간첩행위를 했다느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사상범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국면은 사상의 자유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 탄압이 증가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수년전 마광수 교수가 구속된 데 이어 작년에 장정일씨가 입건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를 구성하고 노골적 성묘사 혹은 폭력 장면을 심는다는 이유로 스포츠신문의 만화가들과 신문사 간부들을 고발한 데 이어 <빨간 마후라> 사건을 계기로 김철이 만화가들과 간부들을 기소하고, <나쁜 영화>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또 『천국의 신화』를 출간한 만화가 이현세를 소환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현재 국면의 성격이 좀더 분명해졌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사상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집중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의 이런 국면은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로 그동안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에 가해지던 검열과 탄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가수 정태춘을

중심으로 한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반대 운동은 일부 승리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금년 들어 예술가들에 대한 소환, 입건, 구속 등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판결의 효과는 기대하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듯하다. 명목상으로는 사전 검열이 철폐되었으나 개인들, 일부 시민단체, 언론방송계가 ‘국민 정서’ 위배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명분으로 음란폭력 표현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검열 효과를 가져오는 입건, 구속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는 방 송심의위, 공연윤리위, 간행물윤리위 등이 ‘알아서 판결을 해주어’ 편하다고 여기던 문화예술 생산업체들이 사후의 책임 추궁으로 더 큰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 외려 사전 검열을 강화하기까지 하는 형편이다. 최근의 사태가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위축시키게 될 것은 따라서 불문가지인데, 우리 사회는 그만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탄압을 받아 위축받게 되면, 사상의 자유마저

법, 음반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개정 혹은 신설로 법제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결과일 것이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주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진행되었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주로 가족질서, 전통적 가치의 파괴 등 도덕적 이유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탄압의 대상은 물론 전통적 가치관을 뒤흔드는 비도덕적 행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문화예술에서 이런 행위는 ‘도덕적 수치감’을 주는 음란한 성묘사, ‘비정상적’ 성관계라고 규정받는 동성연애, 수간 등의 묘사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마광수, 장정일의 소설, 이현세의 만화, 또 <나쁜 영화> 등이 입건되거나 탄압을 받는 주된 이유는 그 표현물들이 음란하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깊이 개재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국면은 도덕적 이유에 의한 문화탄압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문화탄압의 정세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발제의 주요한 목표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사상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이 증가한다  
문화탄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보수세력에 의한 일종의 문화전쟁이 아닌가 한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사상은 꼭 표출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표현과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상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박노해, 황석영, 진관, 김하기 등의 작가들이 구속된 것은 주로 그들의 사상 때문이지만 그들의 사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그들이 생산한 표현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표현은 이처럼 사상의 증거물이 되고, 사상의 최종 발현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결국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낸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우리 사회의 사상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문화예술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탄압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 모순’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영상관계

## ‘문화전쟁’과 신보수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정세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사회의 변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199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에 문화적 자유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세대 네 멋대로 하라’는 구호가 1990년대 초두에 나온 데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에는 도발적이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이다 싶은 정도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감수성을 지닌 문화적 형태들이 등장하였다. 폭주족의 행태에서 보듯 신세대의 삶의 양식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성공속도 역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빨간 마후라>는 그런 새로운 성공속도를 보여주는 혼한 사례일 뿐이다. 청소년에게만 문화적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저호황’을 누리고 1988년 올림픽을 치른 이후 한국에는 이후 지속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가 체질화되는 소비사회적 양상이 나타났다. 과거 문화는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는 ‘고급문화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소비자



본주의의 본격 가동으로 인하여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하였고, 아울러 문화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여성의 욕구와 욕망의 표출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자유 혹은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인데 아울러 자유에 대한 이런 요구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 요구를 한정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노력 또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종의 '문화전쟁'이 아닐까 싶다.

'문화전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신보수세력이 스스로 '퇴폐하고 타락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라고 규정한 세력에 대해 벌이고 있는 '성전(聖戰)'이다. 선진자본주의에서 보수세력은 1960년대 진보세력의 약진에 의하여 수세에 몰리다가 1979년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가, 1980년에 미국에서 레이건이 정권을 잡는 것과 함께 지배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신보수세력은 주로 복음파로 구성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 시민군운동을 벌이는 호전적인 반정부인민주의, 신나치 등 다양한 세력들을 포괄하는데 '풀뿌리'정치를 지향하는 강경우파 혹은 극우세력이다. 최근 오를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을 폭파한 맥베이와 같은 차를 배출하고 있는 이들 신보수세력은 모럴 머조리티와 같은 도덕재무장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로버트슨 목사와 패트릭 뷰캐넌과 같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 나서기도 하고, 윌리엄 벤틀처럼 레이건 행정부의 교육장관 및 부시행정부의 '전국약물통제정책국' 대표를 지내기도 하는 등 미국의 지배층을 이루기도 한다. 이들은 제세 홈즈나 킵너와 같은 강력한 대변자를 하원과 상원

에 가지고 있으며,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중 10개주를 장악하며, 지방자치체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다. 신보수는 1987년 이래 미국의 '전통가치'를 수호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패트릭 뷰캐넌이 1992년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에서 '타락한'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미국을 도로 찾자'는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은 일부 문화계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기 위해 가부장제를 회복해야 한다거나, 유색 인종들을 내쫓고 백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거나, 혹은 가족의 신성함을 짓밟는 동성애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을 한다.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세속 휴머니스트, 성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소수민족들, 반인간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적의를 나타내는 것도 신보수세력이다. 이들은 자신의 광신적 신앙, 서구 혹은 백일 우월주의 등을 비판하거나 여성 및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예술적 표현물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업방송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NPR(공영라디오)과 PBS(공영TV방송), 그리고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NEA(예술지원기금) 등이 일반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반미국적, 반전통적 가치들을 전파하는 데 열중한다며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 서고 있는 것도 이들도이다. 이들 문화전쟁 세력은 정치권 내에 있는 킵너 하원의장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의 풀뿌리 보수집단의 지원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보수세력이 전개하는 문화전쟁과 같은 신보수주의 운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보수적 종교인, 학자, 혹은 시민대표가 정당 후보로 나서거나 동맹을 이루어 발언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오히려 진보적 인사들이 정치적 활동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는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하는 담론정치가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향일 뿐, 우리 주변에 '문화전쟁'과 유사한 보수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지원 검사나 손봉호 교수와 같은 중요한 발언자들이 있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집단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요구와 발언을 법제화한 영상 관계법, 음반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장치가 있고, 공연윤리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준국가장치들이 있으며, 나아가서 보수적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는 명시적 연계는 아니나 일종의 암묵적 협조체계 같은 것이 있어 보이며 최근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실질적 검열과 탄압도 그런 협조체

계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이 발제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양상은 군사 독재 시절의 국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유도되던 것과 다르다. 과거에도 장발, 미니스커트 착용, 약물복용 등의 행위나 '퇴폐' 문화를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리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거나 방송 출연을 금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단속과 탄압이 독재자나 그의 지휘하에 있는 국가기구의 직접 명령과 집행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비국가단체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부응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다(이들 중 많은 곳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들 역시 국가장치 혹은 준국가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전쟁'처럼 풀뿌리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80년대말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조직폭력배나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 등의 형태로 국가장치가 직접 나선 데 따른 호응의 성격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1990년대에 들어와 신세대의 새로운 감수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 사회의 모습

신보수주의 경향은 주로 도덕과 감성의 영역, 즉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울러 이해관계 영역인 경제 영역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와 문화에서 신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의 후예로서 20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의 저항에 직면하자 사회진보세력과 타협 끝에 도달한 케인즈주의적 수정을 다시 과거의 자유주의로 되돌리려는 운동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자유주의의 전황에 맞선 사회주의 운동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유주의가 타협안으로 내세운 케인즈주의적 처방이 그 약효를 잃게 된 1970년대 초 이후로서 이때 자본은 포디즘적 축적 전략을 일부 수정하여 '포스트포디즘' 혹은 '유연적 축적'(flexible accumulation)을 지향하였다. 유연적 축적이란 예컨대 과거의 경직된 기업 조직을 재구조화하

이런 양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보수선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진보세력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더 많이 일으키던 7,80년대와 달리  
지금은 보수세력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 출현, 학교교육의 공동화, 유흥업의 거대 산업화, 인신매매 증가 및 포르노문화의 확산과 청소년의 대거 가출 현상 등에 대해 주부나 일반 시민의 우려가 커져가는데도 경찰 등 정부기관의 대응이 부진함에 따라 불신이 겹쳐져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보수선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은 4월혁명 이후 진보세력의 상승세가 이어져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변혁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일으켰으나 1989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20세기 진보의 전범을 제공하던 현실사회주의가 괴멸함으로써 진보세력은 그때까지 강하게 품어오던 변혁의 전망을 많이 상실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끌어 모으던 힘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분산되었다. 게다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신보수 세력이 득세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의 군사정권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종결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진보세력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더 많이 일으키던 7,8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보수세력이 더

여 일용직, 임시직 혹은 하청 고용을 늘리고 기업을 감량화하며, 컴퓨터기술의 도입으로 생산과 소비의 적기화 등을 시도하고 나아가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여 초국적 자본을 지향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축적 전략이다. 이 유연적 축적은 과거 포디즘을 통해 국가, 기업, 노동 간에 형성되었던 타협을 깨고 복지국가의 틀을 해체함으로써 케인즈주의가 용인한 사회적 화합을 깨는 효과를 낸다. 이 결과 탈규제, 사유화 또는 민영화, 복지비용의 삭감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일이 발생한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민중과 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고, NAFTA 결성에 반대하는 멕시코 농민반란군(자파티스타)의 무장저항, 작년 프랑스의 파업, 금년의 미국의 UPS 파업이 일어난 일이나 금년초에 개악된 노동법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 세력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민주당, 노동당, 사회당 등이 집권하고 있는 국면

에서도 1980년대에 구축된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의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국가와 자본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벌어지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이 일어나던 시기에 중공업을 중심으로 '주변부 포드주의'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동안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1980년대 말 불경기를 맞음으로써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가 기업조직을 유연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 기업의 '군살빼기'로 조기퇴직 유도, 정리해고제도 도입 시도가 일어나는 것은 그 증거이다. 이 결과 핵심요원들 이외에는 일용직, 임시직 또는 하청고용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인구 1300만명중 45%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일용직 혹은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한국도 다수 노동력의 주변부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적 증명이다. 노동력이 이처럼 핵심과 주변

생들'을 집단적으로 양산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기존의 노동자인구든 예비노동자인 학생인구든 인구의 거의 전층위가 핵심과 주변부로 양분되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 양분으로 인해 민중과 대중의 삶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성격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한국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교역수지 12위, GDP 규모 11위에 해당하고, 국민 일인당 소득이 1만불을 넘어선 발전한 나라로 치부되어 이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과실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은 수년전 문화복지를 표방하며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나서기도 했지만 이는 사회복지를 포기하기 위한 호도책일 뿐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삶의 질과는 무관한 '민영화' 뿐이다. '민영화'는 복지국가가 그런대로 완성된 국가들

신자유주의는 통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을 펼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들고, 신보수주의는 사회적 통제를 늘리려는 것이다  
문화적 도덕적 신보수주의의 전략, 즉 문화전쟁이 필요성해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부로 이원화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동질감의 외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신세대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성장에 따른 여성인구의 새로운 욕구 성장을 언급하였는데, 그런 변화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정체성들과 달리 노동인구의 분화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주변적 집단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낙오자' 인구가 증대함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부동하는 사회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부문화, 하위문화, 소수문화를 이룸으로써 노동자문화와 같은 대문화의 동질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국에는 교육모순으로 인한 학생 및 청소년 인구의 문제화라는 현상이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한국은 대중교육을 강화해왔는데, 이 대중교육의 근본 기능이 자본의 안정된 축적과 증식을 위한 노동력 과잉공급에 있었던 만큼 교육의 근본적 개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노동력 과잉공급을 위해서 학생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꾀했지만 노동시장의 위계화 필요로 인해 학생인구 내부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문제화

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경향은 드러난다. 이 결과 거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상품관계로 전환되며, 우정, 사랑, 자연환경과 같이 과거 '공짜'로 즐기던 인간관계나 자원들이 이윤 축적의 수단이 됨으로써 삶의 실질적 공평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기퇴직, 대량해고, 임시직 및 일용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증대해야 할 필요는 더욱 커져가지만 신자유주의는 유연적 축적 전략을 통해 오히려 작은 국가를 지향하며, 복지비용을 축소한다. 사회복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비용 등은 갈수록 개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대중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구의 체계적 방치 속에서 학생들 개인 간의 경쟁으로 사교육비는 급증하게 되고, 의료비용도 복지국가의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체로 개인부담이 크며, 특히 주택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삶의 주요 모순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공공영역의 축소와 또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의 증가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포섭됨으로써 사적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으며, 삶은 예외없이 상품관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일적 지배하에 두고 모든 삶의 영역을 상품관계가 지배하도록 하면서 다시 문화영역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서 탈구가 생겨난다. 탈구는 사회구성체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의 한 층위가 다른 층위의 논리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이런 탈구가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정치문화적 신보수주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대중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며,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서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 농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이들의 차이들을 수입, 인종, 성차, 종족성의 차이에 따른 적대로 전환함으로써 이들 집단들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공공정책을 펼쳐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그들의 몰락에 대한 공포를 임금 위계의 더 아래에 속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한다. 국가에 의한 폭력과 개인의 일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정부기구의 '축소'가 복지 시행을 위한 장치들의 제거로 인한 축소이지 결코 통치와 위력의 축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따라서 통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을 펼친다. 국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길거리에 무장 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국내에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고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들고, 신보수주

의는 사회적 통제를 늘리려는 것이다. 문화적 도덕적 신보수주의의 전략, 즉 문화전쟁이 필요해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대응

신자유주의의 축적논리가 지배적인 논리가 되면서 정치경제는 유연적 축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이에 따라서 노동력의 유연화가 일어나며,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통제의 강화가 발생하지만 유연적 축적은 다시 기획의 중요성이나 기타 다른 창조적 힘을 풀어놓기도 한다. 1980년대말 이후 소위 포스트모던한 문화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유연적 축적이 풀어놓은 새로운 창조적 능력이 문화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데이빗 하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연적 축적이 만연하는 사회는 즉흥성(volatility)과 순간성(ephemerality)이 지배하게 된다. 유연적 축적은 자본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능한 한 '눈깜짝할 사이'에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 쪽으로 자본을 이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장기계획보다는 단기계획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고,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기술 개발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관리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격감하고 재능있는 사람들의 수행능력을 마비시키고, 장기간의 독감과 같은 증세를 낳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인 '여피증후군'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즉흥성의 생산을 적극 관리하거나 그것에 개입하기 위해 취향과 의견을 조작하려는 노력이 극대화한다. 새로운 기호체계와 이미지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광고와 미디어 이미지가 문화적 실천에서 훨씬 더 큰 통합 역할을 맡게 되고 자본 축적의 동학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350-1쪽). 유연적 축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따라서 문화적 생산에 대한 자본의 집중으로 문화가 산업화되고, 삶의 전 영역이 상품생산과 이윤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예술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가 발생하여, 섹스, 화폐, 권력의 상호 관련 현상도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유로운 성문화는 대중의 새로운 감수성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성의 상품화로 성이 화폐관계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안에 자유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유연적 축적을 구사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따라서 문화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된다. 한편으로 유연적 축적 전략이 사회에 만연함에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과실금을 따게 되는 대중도 생기는데 이들이 여파적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특히 금융부문이나 문화생산 영역에서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장하는 세력으로 '문화대중'(cultural masses)이라고도 불리는데, 문화적 자유주의 경향을 띠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다른 한편 유연적 축적은 위에서 분석한 대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인구를 대량 생산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문제아 혹은 낙오자들이 되면서 '펑크적' 경향을 띠는데, 우리 사회에는 지존파나 막가파가 아니면 폭주족, 봉다리족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문화적으로는 여파든 펑크든 금융주의나 경건주의보다는 향락주의 혹은 우상파괴주의 등 자유주의적 양상을 띠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문화에서 자유주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상에선 동성애든 자유로운 성관계를 추구하거나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성 표현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꾀하는 등 기존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의 틀을 깨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문화의 이런 자유주의를 방치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의 감성이나 행동방식이 경제적 생산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예술적 실험들이 사회적 복지를 필요로 할 때 문화의 자유주의는 대체로 억압되거나 선별적으로만 허용되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개인의 자유만 허용함을,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가 인간 모두에게 허용되는 자유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보다는 독점하려는 입장이며, 따라서 문화적 자유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치게 된다. 문화의 자유가 여파와 같은 일부 문화대중에게만 허용될 뿐, 여파와 동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펑크의 경우는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략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등장하고 있는 폭주족처럼 일탈적 행동을 추구하는 집단들에 대한 기성세대, 경찰 당국, 언론, 방송 등의 반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폭주족과 같은 '문제아', '빋나간' 청소년들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가 주도해낸 새로운 인간형의 하나이다. 문제아, 가출 청소년들, 폭력학생 등은 자본주의 교육이 수행하는 인구정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늘 감시와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위협하게 여기는 지배세력은 이들의 출현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격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도덕적으로 재단하며 일부의 음란폭력을 생산자에게 있다고 우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양상들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추동되는 자유주의적 경향들의 대중화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들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가족을 삶의 최종적 안식처로 만들고자 하는 가족이데올로기(〈나홀로 집에〉), 결혼을 신성시하는 결혼이데올로기(〈사랑과 영혼〉), 개인보다는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국가이데올로기(〈람보〉, 〈인디펜던스데이〉) 등이며 필요에 따라서 도덕재무장과 같은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보수적 노력들은 '전통적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 기획과 같은 사회통합 정책으로 수렴되기도 한다. 영국에서 1979년에 정권을 잡은 마가렛 대처의 교육장관 케네스 베이커가 한편으로는 신직업주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적 혜택을 받던 인문학(the Humanities)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과정 대신 직업교육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인의 영국인다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교과과정'(the National Curriculum)을 강화하려 한 것이 그 예이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교육부장관을 지낸 윌리엄 베넷이 '문화전쟁'(the Culture Wars)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새로운 통신 및 정보 자본의 등장으로 문화에서 자유주의를 강화할 소지가 나타나서 국면이 바뀔 가능성

도 없지는 않다. 빌 게이츠같은 새로운 자본가들은 인터넷과 같은 자유로운 통신의 전세계 확산을 필요로 하므로 문화적으로도 자유주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위 '사이버 문화가 자유주의적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데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사이버문화와 '가상 계급'(virtual class)이 등장한 미국에서 문화전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보수주의의 자유 통제는 쉽게 중단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모순이 존속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할 듯싶다.

#### 대응의 방향 모색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공안당국과 공운 등 보수세력의 탄압 혹은 검열에 맞서기 위해 우리 사회 진보진영은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방안을 제시할 차례가 되었는데 사실

**국내 진보진영은 엄숙주의와 경건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한 구진보적 성격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신보수적 탄압이 일어날 경우  
진보진영 내부의 분란으로 인하여 대응을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걱정이 앞선다. 몇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 발제문의 한계로 문제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처지라서 제시하는 방안이 내부 토론을 위한 가안 정도의 성격 이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현 탄압국면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한 정세 분석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면 일단 대응은 신자유주의적 축적 논리와 그 문화적 탈구 현상에 대한 대응이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데 반해 탄압받는 당사자는 정세 분석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 국면이 생길 때 현안문제에 대해 장르별로 투쟁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탄압을 받는 당사자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쟁의 성과를 쌓기 위해서는 전체 국면과 정세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음반법에 대해서는 일부 검열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매체영향력이 적은 '오디오'는 풀어주는 대신, 영향력이 큰 '비디오'는 움츠리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전선'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세분석 능

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으면 공조를 구축이 어렵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통신검열의 문제는 남의 문제로 보이고,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컴퓨터 혁명이 삶의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고, 전자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전지구적 경향들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은 오늘 이 토론회가 다루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의 장르들, 문화적 실천의 부문들이 개별화, 파편화하여 움직이기만 해서 안될 것으로 본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과거처럼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인식하여 대응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는 것이다. 이 발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진행되는 탄압에 가담하는 세력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현재 간행윤리위, 공연윤리위, 방송심의위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며, 그 정치경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사회적 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이들은 개인일뿐인가 아니면 대중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신보수주의 세력이 소수 개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위 '풀뿌리' 정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운 등의 '심의관'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감수성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논리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이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 강지원 검사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표현물을 보지 않을 권리,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므로 남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할 뿐이라는 입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에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려는 측과 음란물을 보지 않을 권리를 추구하는 측 사이에 타협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어떤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여기서 쟁점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와 거부의 권리 간의 경계선을



장정일의 소설 '나에게 거짓말을 해봐'는 최근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는 '음란성'에 대한 검열과 탄압의 첫 제물이었다

어떻게 그를 것인가로 축소된다. '등급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이며, 만화 등의 유통 통제를 해야 한다니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니 식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경제선을 왜 인정해야 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성적 흥분을 초래하면 음란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것이 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따지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아가서 또다른 쟁점은 성적 흥분, 혹은 수치심에 대한 판단

을 누가 내릴 것인가라는 점이다. 수치심은 누구의 판단인가, 개인의 판단인가, 집단의 판단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단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아직 논란을 제대로 벌인 적도, 합의에 도달한 적도 없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 외설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면 사회적 합의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최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문제와 쟁점들이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사회는 공문이나 방송심의위 등이 사전 혹은 사후 결정과 처벌의 위협으로 영화, 책, 음반 등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의 일방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공격이 정세적으로 규정됨을 이 발제를 통하여 살펴본 셈인데, 그렇다고 하여 논리적인 투쟁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논쟁의 종식이며, 이는 곧 사회에 허용되어야 할 비평의 자유를 축소하는 셈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큰 자유가, 혹은 원리가 침해받거나 무시당하는지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표현자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탄압을 시작하는 것은 사회의 비판적 능력을 축소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동시에 국내 진보진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경제적 진보와 문화적 진보의 공통점 혹은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의 공감대 형성 혹은 입장 차이의 확인을 위하여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황석영, 박노해, 진관, 김하기 등의 투옥과 장정일의 구속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늠하며, 어떤 잣대로 재단할 것인가? 장정일의 구속에 대해 사석에서 '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진보적 비평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이며,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화에서 어떤 태도가 진보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 생각으로는 국내 진보진영은 엄숙주의와 경건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한 구진보적 성격이 크다. 구진보는 사회주의 국가의 당국가가 내세우는 헌신적 영웅주의를 이상화하며 기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진보의 감수성은 현재 새로운 감수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성의 자유나, 기존 사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에 대해 나타나는 '버릇없는' 반응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 혹은 도덕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감수성에 따른 실험적 삶의 방식, 전통적 가족관계의 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페미니스트, 혹은 동성애자들의 행동방식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보수적 탄압이 일어날 경우 진보진영 내부의 분란으로 인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은 당연하다. <빨간 마후라>나 <나쁜 영화> 등이 탄압을 받거나, 혹은 『천국의 신화』가 입건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이 가진 문화예술적 감수성 문제를 쟁점으로 떠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곧 '차이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말이 아닐까?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다르게 살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의 욕구가 분출하고, 혹자는 음란하고 퇴폐적으로 볼지 모르나 성적 표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하

의에 의해 나왔다가 취소된 것만 보더라도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술장식품 설치의무는 겨우 존속되었지만 현행 규제대로라면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모두 1%범의 대상이 되던 것이 이제는 연면적 2만평방미터 이하 건물은 건축비의 1%에서 0.7%로 하향 조정되었고, 2만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2만평방미터까지는 0.7%,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로 더 낮추어졌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 이런 식의 규제 철회나 축소 조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BS 노조의 파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방송국이 예산 지원 없이 위성과의 방송을 파행 운영하려는 데 대한 항의의 성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단 방송만이 아니라 공익성 사업에 대한 지원 부족 현상은 우리 사회 어느 부문에나 발견되는 고질병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와중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는 무한으로 추구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서  
제한과 억압을 가하는 이 세력은 자유를 독점하려는 세력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 독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만 이런 표현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면 당위와 욕망, 절제와 쾌락 사이의 간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 간극을 최대한 긴장되게 벌여놓는 것이 좋겠는가, 혹은 간극을 최대한 축소해야 할 것인가? 또 표현의 어떤 수준까지가 개인적 권리의 표출이고 어디에 이르면 범죄가 구성되는가? 우리 사회와 진보진영은 이런 질문을 화두로 삼는 것을 두려워했거나 혹은 그런 질문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였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글을 맺으며**

이 발제는 현단계 문화예술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족하나마 정치경제학적 정세 분석을 시도한 셈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경향이 쉬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이 발제의 분석에 일리가 있다면 문화예술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통제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조항(일명 1%법)을 폐지해야한다는 건의가 정부규제개혁추진회

상승하는 데 따른 문화적 결과로서 사회복지의 축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도덕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해체와 유연적 축적의 전략 구사는 부분적으로 여피문화의 가능성과 성적 자유 등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일탈로 보이는 현상들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는 오로지 문화의 상업화 혹은 문화산업의 출현에 따른 결과이다.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적 태도가 문화로 이월될 때 선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여피문화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수용하지만 평크적 경향을 띠는 자유주의적 태도는 즉각 공격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적 면모를 띠게 된다. 경제에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은 대중의 개인적 문화적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치나 종교적 권위에 호소하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는 무한으로 추구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서 제한과 억압을 가하는 이 세력은 자유를 독점하려는 세력이다. 이 독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는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민족예술**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 광 희  
변호사



우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요즘의 상황은 문제되는 매체도 소셜, 만화, 신문, 컴퓨터 통신 등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에도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위시한 출판물과 <파업전야>와 같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군사정권시대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군사정권시대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측이 당연히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압제에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크게 보아 독재에 대한 민주

화투쟁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논리의 탐구와 대안의 제시같은 이론적, 정책적 차원에서가 아닌 정치적, 물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다름은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요소가 다소 약화된 상태로 계속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얽혀든 복합적인 것이다.

###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검토

‘표현의 자유’ 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해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단순한 문제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그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는 측에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한 논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 편이 주장하고, 다른 한 편은 ‘사회전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응수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거의 무력함에도 논의가 확장되거나 구체화되지 아니한 채 반복되고 있다. 가령, 스포츠신문의 만화가 문제가 되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해당 신문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의견을 밝혔는데, 각 의견 사이의 논조의 차이는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의한

최종적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동일한 논리로 합일될 수 있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경만으로는 장정일씨가 과연 처벌되는 것이 옳은지, 이승희씨의 누드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하는지, 스포츠신문의 만화가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어디까지인지, 한총련이 만든 자료집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되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지점을 정확히 하고, 그 해결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제의 복잡성 성격에 밝힐 필요가 있다.

### 1)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문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내용별로 나누자면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성적인 ‘표현의 자유’와 폭력적인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러한 구분을 명백하게 하

정치적인 표현물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2) 침해의 주체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는 국가권력이었다. 그런데,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가 충분히 해결되기도 전에 국가권력에 못지 않은 부작용을 보일 주체가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으니 바로 자본이다. 그 가장 극적인 예는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뒷받침하는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천안문 사태를 다루었다는 <태평천국의 문>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결까 고민하던 주최측에 의해 상영이 취소되고, 더불어 본선경쟁 출품작이었던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 헌터>마저 상영이 취소된 것이다.

또한, 같은 자본이 경영하는 종합일간지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포츠신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만화를 게재하는 언론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들이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구분을 명백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르게 취급받아 마땅하다

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경우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중요성, 원리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는 메커니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르게 취급받아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면 논의의 흐름은 ‘음란물 규제’의 문제로 치환되거나 몰타기됨으로써 우선 시급한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달달아 달미를 잡히는 예가 적지 않았다. 영화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영화는 사회적·정치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독립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번진 논의의 중심은 ‘포르노영화 관 허용여부’로 대표되는 음란물의 문제였고, 그것은 사회비판적인 영화의 해방마저도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경우 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의 논리가 풍부한 음란물의 규제수준에 맞춰

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 자본으로서 지배적인 사상과 문화를 옹호하는 보수성, 기업으로서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말초적인 자극을 생산할 필요성 사이에서 일관된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매체의 다양성

현재 매체도 다양한데 그 침해되는 매체는 소셜, 만화와 같은 고전적인 출판물과 영화, 비디오물같은 영상물을 포괄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CUG(폐쇄이용자그룹)와 같은 컴퓨터 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도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침해들은 사상적으로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되 각 매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그 억압에 대한 공동 대응이 있어야 함에도 각 영역이 처한 입장과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저항이나 대응만을 해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그 침해되는 매체가 다르면 각기 다른 방식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각 매체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확보 정도도 다르고, 음란·폭력물이라고 하여 단죄되는 정도



우리시대의 양심수  
황석영과 함께!!!

과거에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란물 규제 문제로 몰다가림으로써 정치적 표현자유가 당달아 달미를 잡히는 예가 적지 않다

도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이 상이하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가령, 만화가 음란·폭력물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규제에 좀 더 노출되는 이유는 단순히 문자에 의하여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설 등에 비해서는 수용자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매체의 차이가 다른 강도와 내용의 억압을 낳고 이에 따라 그 논의가 진행된 정도가 불균등하므로 대응방법의 모색이나 현재의 억압적 구조를 대체할 대안적 메커니즘의 제시에 있어서도 총론은 같되 각론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지금까지의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라는 평면적인 문제제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그 반대논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당한 중간을 찾아 선을 긋는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볼 경

우, 지금 벌어지는 상황처럼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보호'가 마치 언제나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여론을 잘못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래취지는 실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① 모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② 만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③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는가
- ④ 우리 사회는 '불온', '음란', '이적성', '유해'와 같은 개념에 대한 논리적 기준을 발견하고 합의할 수 있는가
- 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인가
- ⑥ 매체의 차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에 차이를 낳는가
- ⑦ 각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수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 ⑧ 소위 음란·폭력물은 추상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도 범죄의 증가나 성적행동의 변화에 기여하는가

#### 1)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적 논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적 논리의 고전인 『자유론』에서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권력 행사의 한계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리는 거의 모두 이 저작에 들어 있는 바, 이를 요약해본다.

(1) 강제적 방법으로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방어'이다. 그리고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2)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그것이 타인과 관계되는 개인의 행동 부분에 속하지만, 그것이 사상 자체의 자유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하고, 양자를 실제로 분리할 수 없다. 한편, 비록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눈에 바보스럽거나, 기이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들로부터 박해받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된다.

(3)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

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4, 5 생략)

(6) 존 스튜어트 밀은 그리하여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들어서도 자신들의 자의적인 잣대로 '이적성'이라는 논리를 동원하여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진보적인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어떤 논리는 그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에 의하여 평가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호논의를 통하여 폐기되거나 도태될 뿐이므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한다는 것은 가장 규탄할만한 범죄이다.

둘째,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은 일정 정도 이상의 것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행하여질 경우에 일부 사람들의 감수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사람이 강제로 일정 정도 이상의 표현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시에 그것이 미성년자들에게 함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동시에 기만되지 아니한 채 동의하는 성인 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도덕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동시에 기만되지 아니한 채 동의하는 성인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 2)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가능한가.

이러한 밀의 고전적인 논의를 참조해 보았을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가권력은 문민정부에

3) 미성년자의 문제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는 것이 음란·폭력물로부터의 미성년자의 보호이다. 사회로서는 그 판단능력을 보충하고, 감수성을 보호하여야 할 미성년자를 위하여 다른 성년자가 그에 대하여 음란·폭력물을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차단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표현물을 향유하여 행복을 추구할 성인의 권리를 최고도로 보장하되, 그러한 표현물로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위하여 일정한 표현수준을 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성인 중 원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나 판매방법,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하에 줄속입법으로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청소년수준으로 낮추는 점, 사실상의 검열의 권한을 국민 일반의 평균적 감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적어도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



지 아니하고 있어 자의적이고 침해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표현매체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규율하는 것 기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입법의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국가는 매체물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마지막으로, 그것도 신중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 4) 매체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표현의 자유'가 최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본에서는 매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하여 그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때에는 분명히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일반적인 소설과 만화, 영화는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 명백히 한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만으로 완전히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정한 사람의 보호를 위한 요구 사이에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에는 사전검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영은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완전등급제

와 일반영화관에서 상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의 상영을 위한 등급의전용관의 설치'라는 도식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비록 새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등급의전용관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영보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나쁜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사실상 검열이 계속 행해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소년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마저 위 도식 자체에 대한 본래의 거부감을 버리고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 비하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만화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더 어려운 것은 아직 그 기술적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매체의 특성에 대한 안정된 평가가 곤란하고, 전세계적인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통신의 경우이다. 이 매체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수용억제를 의도하는 경우에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수준 침해하여야 하며, 국가권력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새로운 관리의 메커니즘을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 5)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

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므로 처벌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 어떤 이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realism)'일 뿐이고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colorful)' 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제하려고 하는 대상의 성격을 그렇게 불분명하게 자의적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면 통제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단념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국민 일반의 감수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거나, 최악의 상황은 국가기구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호한 기준을 갑자기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만 처벌하여

셋째, 국가권력 역시 정확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고전적 논리를 숙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넷째, 각 매체는 '표현의 자유'를 획득함에 있어서 불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 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

**표현의 자유가 최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본에는 매체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나 동의하지 않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하여 그 유통관리를 할 때에는 분명히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부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고전적인 매체에서부터 현대적인 매체까지 망라하여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 동안의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여 국가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같은 집중력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 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성질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연히 하나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침해를 그 근거와 매체, 주체별로 구체화하고, 각 매체별로 고전적 논의에 근거한 충분한 대항논리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매체의 특성과 결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관철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이 연구와 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역량을 높이며, 위험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재판 등을 통하여 변경해가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여론을 설득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하루 바빠 쟁취하여야 한다. **민족예술**

# 문화생산자가 본 표현의 자유

김수정  
만화가

근간에 언론 등을 통해서 만화에 대한 탄압들을 들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만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젊은 만화가들을 비롯한 많은 만화가들이 있는데 속으로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닦쳐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그 이면에 있는 그동안 작가들이 당해왔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리적이지는 못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얘기를 좀더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에 있어서 만큼은 문화전쟁을 유도할 만큼 만화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고 싶다. 내가 만화계에 데뷔하기 이전부터 심의는 존재했다. 심의가 합당한가의 문제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만화가 그동안 받아왔던 수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겠다. 일반인들에게 만화의 심의라고 하면 보통 음반에서 기대하는 상식적인 정도가 아니다. 만화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뛰어넘고 있다. 심의를 업으로 하는 심의위원의 행태라는 것은 심의조차 자체가 만화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 있다고 할 만큼 기상천외한 부분들이 많다.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아기공룡 둘리>를 지금은 즐겁게 보겠지만 둘리가 처음 나온 15년 전에는 불량만화로 낙인찍혔다. 그것이 10여년 지나면서 우리 만화를 대표하

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번 불량만화 목록에서도 '둘리'는 빠져 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간윤이나 시민단체의 적이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7년전에 『귀여운 쪼꼬미』라는 교육만화를 그린 적이 있었다. 그 때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표현물을 통해 성교육을 유도하려는 목적 하에서 상당부분 준비해왔다. 책을 만들기 전에 한 잡지를 통해서 연재가 되었는데 그 연재를 할 당시 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교과서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 만화가 연재될 때 시민단체로부터 열화와 같은(?) 비판을 받았다. 왜 알지 말아야 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가며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을 했다. 성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시민단체의 학부모들은 그것을 음란물로 본 것이다. 그때 나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럴 정도로 심각했는데 문제는 시민단체의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작품이 3년 후에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어떤 단체의 추천도서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의 표현물에 대한 판단이 3년을 내다보지 못한 시각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만화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억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심의를 받아왔던 불합리한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단체나 기득권자들은 만화를 예술

의 장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가들은 계속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

또하나 짚고 싶은 것이 청소년보호법이다. 모든 만화가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한 작가의 시각을 모든 사람들이 좋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만화를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파악할 수는 없고 만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또 그것이 대중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만화에 대해서 최고도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음란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각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군가는 음란하게 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상당히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만화계의 문제는 소수의 인원이 판단한 시각을 전체 국민의 잣대로 몰아간다는 것이고 그 파급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청소년보호법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만화인들이 11월 3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부문

명백히 잘못된 법은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운동의 전개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만화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통보를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이 왜 규제로부터 출발을 하는가라는 점이다. 그쪽 사람들은 만화를 활성화시키고 작가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허울좋은 얘기이다. 왜냐하면 현재 청소년물과 성인물을 구분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서는 안되는 만화들에 대해서는 '유해매체'라고 분류한다. 성인물이나 어른만화라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말이다. 그 시각 자체가 만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규제를 위한 입법이었던 것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일단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면서, 즉 죽이기작전은 시행하면서 사후대책은 스스로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물과 성인물을 구분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서는 안되는 만화들을 '유해매체'로 분류한다  
성인물이나 어른만화라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말이다  
그 시각 자체가 만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규제를 위한 입법이었던 것이다**

에서는 조용했다. 공동의 문제이고 만화가 먼저 걸린 것 뿐인데 왜 여타 문화단체에서는 조용한가. 아무 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각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음대협, 청소년보호위원회, 간윤이 만화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 어제 YWCA에서 간담회를 했다. 그 때 나왔던 청소년보호위원회 담당자는 모든 표현이나 법적인 문제, 만화가들이 제기한 문제를 7월 1일부터 발표되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묶어서 얘기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잘못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모든 문화의 기준을 형법의 시야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외쳐도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자체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97년 7월 1일로 그 시행일자를 명시하고 소급적용은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해매체로 분류된 1700여종 중에는 1986년에 발표된 만화도 있다. 또 하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그것을 유해매체라고 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들은 그동안 간윤이라는 임의단체가 등급을 규정했기 때문에 86년도 작품도 거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간윤의 기준 또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법을 제정하고 음란매체라고 규정하는 단체들의 시각이다. 만화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은 만화를 탄압하는 단체들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청소년보호법의 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한다. 아까도 일진회 얘기나 <빨간 마후라>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학원폭력이나 학교폭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단지 음성적으로 존재해왔다. 40대 후반인 나도 시체를 뺏겨 보기도 하고 강패들에게 맞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 만화에 의해서 학원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하나 <빨간 마후라>는 이전에도 나올 수 있었다. 왜 못 나왔나 하면



그 때는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들 학창시절을 거쳤겠지만 그 때에도 여학생, 남학생의 관계 때문에 정학을 당하던 학생들이 간간히 있었다. 그 학생들이 갑자기 만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 설사 만에 하나 만화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수의 학생들에게 만화가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만화의 역기능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왜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지 않는가. 만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고 만화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을 입안하고 만화를 매도하는 사람들은 만화와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로 단지 '만화라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의 장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작가들을 고발하고 검찰과 연계를 해서 큰 파동을 일으켰는데 그 분에게 동료가 몰렸다.

"만화책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는 "나는 만화책 안봤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고발을 했는가라고 물으니 "밀에 직원들이 보고 올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적어도 한 단체의 장이라면,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후속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재를 할텐데 너무나 다들 성급하다는 것이다. 성급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만화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 존재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는 만화계 전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또다른 이유는 정부의 실정, 정부의 정책에서 오는 문제들, 기득권들의 비리, 자기모순들을 청소년들에게 뒤집어씌우기 때문이다. 학교교육만 하더라도 10년전부터 존재했고 현재의 문제들은 예견된

문제들이다. 일반인들도 느낀다. 보통 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등급으로 구분이 되면서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인정을 받지만 진학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낙오자가 되어 상처를 받는다. 그러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청소년들이 놀이터에 모여만 있어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청소년들을 이해한다면 청소년들을 장려하는 법이 되어야 하는데 온통 규제 투성이이다. '청소년을 위한' 이라는 구절 말고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항목은 없다. 뒤집어 말하면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성인보호법이다. 왜냐하면 공중전화에서 어른이 전화하는데 청소년들이 오래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길에서 애들이 몰려다니면 어른이 피해야 하니까 어른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만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매체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적어도 외국의 경우는 성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거나 마약과 같은 함정에서 청소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이전에도 있었던 미성년자보호법, 미풍양속법 등 무수한 법이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문제이다. 만화계의 탄압 사례를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만화는 탄압을 받아왔고 만화가들은 한이 맺혀 있다.

그리고 지금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화가들은 '만화를 문화로 인정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만화를 없애버리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만화를 없애서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된다면 아예 총력을 기울여서 만화를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닌가. 정부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영상매체의 부흥을 외쳤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정부가 돈 되는 것은 아는데 돈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산업 이전에 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데 단지 산업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그 뒤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대우가 프랑스의 국영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는 단지 문화가 없는 나라에 자기들의 자존심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 **민족예술**

##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리 · 편집실

###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 '등급부여 보류'는 사실상의 검열장치

영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심의(등급부여)의 핵심 문제는 자율의 영역(자율기구의 영역)과 타율의 영역(사법기관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 심의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화진흥법 조항만 검토하기로 한다). 10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제12조 제6항을 요약해보면 "공진협은 어떤 영화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 공진협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등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제12조 제5항의 '등급부여 보류'라는 제도가 뒤집고 있

다. 영화진흥법 자체에 충돌하는 조항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유해성(위법성)이 분명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 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강제하면서, 영화를 만든 창작자나 영화사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자르도록 강요하는 강제력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등급부여'라는 말 자체도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권위적이다.

문제의 등급보류 조항은 논란이 많은 국가보안법 등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정부비판이나 체제비판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란 정부비판 영화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해야 한다는 보신주의에 불과할 뿐 청소년 보호나 법적인 타당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 일부 지식인층의 영화규제론은 그들이 보기에 과도한 표현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일반 국민을 대신해서 봐야 할 것과 봐선 안될 것을 미리 구분해주어야만 한다는 엘리트주의에서 나온다.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이뤄진 심의에 대한 공론의 분석자료(표1) 참조, 1996년 5월호 『공연윤리』를 살펴보자.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전기간의 수정비율은 57%에 이른다. 많을 때는 81.8%의 영화가 수정되었다. 이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공론이 문제 있는 장면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삭제도 하고 단축해주었으니 영화는 순화되고 일반 관객들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

르는 것, 혹은 자르도록 강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잘라야 하나냐는 주장과, 왜 덜 자르느냐는 주장이 공존하기 마련이고, 심의기구는 불안한 줄타기를 해야만 한다. '등급부여 보류'라는 절대권을 공진협에 주고 있는 한,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표1〉 본 심의통계(단위: 편, %)

연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심의 편수	75	124	107	130	115	104	110	126	174	260	374	389	377	415	412	447	412
수정 비율	60.067	58.966	25.9	16.9	28.1	88.1	071	86.4	65.1	65.4	25.9	75.1	65.0	75.1	04.4	2	

### 합리적 기준에 따른 완전등급분류제의 마련

'등급부여 보류' 제도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공진협이 결정한 보류를 뒤집기는 불가능하고, 영화사는 당연히 보류의 사유가 된 내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기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세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유추해석하자면 1, 2, 3호의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 해석된다.

영화진흥법 및 시행령안의 등급부여의 목적과 등급부여 보류의 기준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등급보류의 사유 제1호는 형법상의 '내란죄'나 국가보안법으로 다를 사항이고, 3호는 형법상 '국교에 관한 죄'나 관세법상의 수입금지물품 규정으로 다루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2호 또한 형법상의 '음화 제조 및 반포죄'로 다루야 하는 사항이나, 영화 상영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등급분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영화진흥법 시행령(안) 제12조의 4나 시행규칙(안) 제15조의 4가 정하고 있는 등급보류기준에는 위의 1호와 3호에

### 성인 전용관을 왜 설치해야 하는가?

전용관은 음란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표현을 오히려 규제하는 장치이다  
전용관이 생기면 심의는 더 까다로워지고 극단적인 상업성 영화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때문이다. 6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 보류의 기간(시행령안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을 얼마로 조정하느냐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

개정 영화진흥법 제12조 제6항에서 "현저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확증이나 법적 판단은 아닌 의심일 뿐이겠지만) 공진협이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는 검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조항은 공진협이 법적인 규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판단(기소권 행사나 종교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이 규정에 따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이 다른 실정법 위반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이현세의 만화 「천국의 신화」를 검찰이 문제삼고 있음은 공진협의 한계와 역할범위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개정 영화진흥법은 등급부여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제12조 제5항은 등급부여 보류의 사유를 1.

해당하는 것 말고도 자율적인 등급분류의 기준으로서는 부적합한 것들이 있다. 형법상의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항,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항(1996년 9월 6일의 대법원 판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선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등이 그렇다. 결국 시행령에서 정할 등급분류의 기준은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지영역'과 대체되는 개념으로서의 '관리영역'에 대한 좀더 넓은 범위의 전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선택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성인영화전용관을 만들어 일부 영화의 상영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면서, 영화진흥법에서 만큼은 모든 영화에 대해 상영의 기회를 주는 완전한 형태의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다. 성인영화전용관은 왜 설치해야 하는가? 우선 전용관이 없으면 등급보류라는 검열장치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등급보류가 없는 정상적인 등급분류를 한다고 할 때, 전용관을 두지 않는 것에 법률적인 하지는 없다. 그러나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구조로 인해 행정력이 정상 작동되지 못하면서 등급을 어겨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경우가 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인영화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형법이 금하는 음란물은 아니나 폭력과 성표현이 심한 영화를 따로 가려서 상영공간에 제한을 두고 광고도 막자는 것이다. 전용관은 음란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표현을 오히려 규제하는 장치이다. 전용관이 생기면 심의는 더 까다로워지고 극단적인 상업성을 추구하는 영화는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사실 영화심의회와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등급분류의 기준을 과학화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등급분류의 기준을 마련하여 영화창작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을, 관객 특히 청소년 보호자에게는 영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심의를 거친 선정성 비디오와 '음란물'로 기소·압수된 비디오의 성적 공격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자. '음란물'의 해악이나 부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적대적이거나 품위저하적인 묘사 그리고 그 속에 팽배해 있는 폭력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선형적인 가설과는 달리 '음란물'로 간주되어 압수된 비디오보다 합법적으로 대여되고 있는 성인용 선정물이 공격묘사의 빈도와 심각성에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심의체계는 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다. 군사문화의 유산인 왜곡된 남성성의 강조가 영화와 등급기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폭력·살인 등으로 인간을 제거하는 행위, 빈번한 성폭력, '강간의 신화' 등 성적 허위의식을 조장하는 장치들. 현재의 심의기준은 노출만 문제삼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지어 삭제물 통해 영화를 순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몇 장면만 잘라낸 성인영화에 연소자관람가 등급을 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삭제를 강요하는 심의기구가 있다는 사실은 영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줄이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권력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상호무책임주의를 조장한다. 결국 지금의 심의체계는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모두를 놓치고 있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영화진흥법은, 조속히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 표현의 자유와 문학인의 책임

방민호  
문학평론가

작년 하반기에 장정일씨가 구속되고나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나 서명직업을 하지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작가회의에서도 토론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서운하다'는 입장들이 있었다. 기존의 황석영씨, 김하기씨처럼 국보법에 연루된 문인들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고 서명이나 <황석영 문학의 밤> 등의 행사를 하면서 동참하기를 바랬었는데 무관심한 채로 진행이 되어왔다. 그런데 장정일씨가 구속되거나 신세대 문학인(?)이나 대중문학인들을 필두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같이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작가회의 내부에서도 작가회의가 지향하는 문학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학인들이 사상의 자유와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장정일씨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단체 차원이 아니라도 구성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했었다.

90년대 중반 전후로 마광수씨라든지 장정일씨 등이 성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 시대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사실은 사상의 자유라는 문제와 결합되면서 많은 문학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연루되었다. 기존에 왜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나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문학인들이 구속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일원화된 사회였고 억압된 사회였다.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성별, 지역별 요구들이 다양한 요구로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로 집중되어 표현되었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문학부문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0년을 전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기본적인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예전보다는 나아진 측면이 있고 88올림픽에 즈음하여 한국자본주의가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문화 영역에 자본이 투여되면서 문화 자체가 전면적으로 산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문학을 둘러싼 상황 또한 달라졌다. 예전에는 문학이 문화의 으뜸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학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고급한 장르로 인식하게 되고 많은 대중들이 비디오, 만화, 음악, 영화로 이전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문학인들은 어떻게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문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문학도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학으로 가야 한다면 서 문화산업화의 논리가 문학에 강제되고 문학 내에서도 그것에 공명하는 문학인들이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신국가주의라든지 신보수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정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문제들을 보였다.

그런 차원에서 문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볼 때 아주 예전에도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정치사상의 문제로만 부각되다가 90년대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성적·도덕적인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합의된 것에 바탕한 국가권력(심지어 우리나라는 합의되었다고 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국가권력이다)에서 과연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가. 나는 본원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나 법에 의해서 문화나 문학적 생산물들이 통제되거나 검열당하거나 제재를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 국가기관이나 법이 그런 문제들을 검열하거나 제한해서 안된다면 결국 문학에 있어서의 책임 문제는 누가 질 것인가. 그것은 결국 문학인의 문제이다. 또 문학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 시민, 독자들의 의식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모호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가능하다. 문학인들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스스로가 지성의 권위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심의기구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문학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들로부터 시작되는 연구와 배려, 장치들을 마련하고 또 시민이나 어떤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들에 매우 섬세하고 장기적인 형태로 접근되어야

**국가기관이나 법이 그런 문제를 검열하거나 제한해서 안된다면 결국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책임문제는 누가 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영역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문학이 나타나게 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만 폄하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여성, 지역, 환경 문제 등으로 분화되었거나 기존의 정치개념 말고도 또다른 문제들이 같이 투쟁의 장, 토론의 장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문학이 그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광수, 장정일 등이 지향하는 문학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를 다룬다는 이유로 법이나 국가기관에서 검열이나 통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국가기관이나 법이 문학이나 문화의 본성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국가나 법은 공인되었거나 이론화·담론화·집단화된 논리를 제공하고 정돈한 것이지만 문학, 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문화나 문학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나 문학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가치체계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적인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에 본질이 있다

한다. 어느 정도로, 어느 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소비될 수 있는가, 제한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국가적·행정적·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문제, 문학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심의의 문제로서 새로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모인 상황에서 문학은 다른 장르들과는 달리 중요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장르라고 보는 편견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국가권력의 부당성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화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대중매체 범람 현상들 속에는 자본의 논리에 영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제어하고 국가권력의 통제에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표현의 자유에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영역인가 라는 것에 관한 토론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장정일씨가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를 취한 적이 없는



데 그런 식의 선입견들도 없지 않다. 지금은 논의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참다운 자유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할 때이다.

가 많다. 즉 "나하고 다른 사람은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좋다"는 식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국가가 가상공간에 대해 취해온 정책은 방임정책이다. 위법하든 하지 않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해왔지만 95년을 전후로 하여 각국에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런 간섭정책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나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국가주도적으로 간섭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엔 '포르노'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간섭정책을 취하고 있다.

사회운동중 가장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기운실을 정점으로 한 청년도주의자들이다. 적극적인 국가검열/심의의 옹호로 대표되며 사회에서 이들이 시민사회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활발하다. 반대로 다른 집단은 거의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고 할 만큼 관심이 없다.

### 가상공간에 대한 한국적 심의정책의 특징

정보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삭제와 아울러 이용경고, 사용정지 등의 이용자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한총련 CUG 같은 경우 '불온통신'을 해서 계약위반을 했다고 폐쇄되었다. 또 ID삭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창녀론을 말했던 김완섭씨와 양성운동을 했던 신정모라씨가 있다. 3대 통신망에서 공히 삭제가 되었는데 그 삭제는 통신회사에서 삭제한 경우도 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삭제를 명령한 경우도 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이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가

##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 형 준  
침세상 운영자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자의 입장

미디어자본 혹은 정보자본에서의 표현은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정보상품을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가상시장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개인기업이나 SOHO 등도 이런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이것은 포르노산업의 가상시장(cybermarket)의 진출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안한 인터넷라운드도 이런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표현이란 국가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PC통신상의 글쓰기나 인터넷 뉴스그룹을 통한 글쓰기 혹은 홈페이지만들기 등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은 검열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

**통신에 있어서는 등급의 문제가 있다**  
**등급제를 가상공간에 적용시키게 되면 행위자체를 등급제화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결국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는 홈페이지 행위 자체를 차단당하게 되는 것이다**

상공간에 있어서의 검열에 대한 기본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 방법은 기술적 검열이다. 디지털매체이기 때문에 기술적 차원에서 검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어로는 블랙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검열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용자가 인터넷 웹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특정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으면 특정 사이트에 가지 못하게 된다. 또 보서는 한되는 단어를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블랙소프트웨어가 개인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 국가에 의해서 블랙소프트웨어가 깔려서 일괄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당하게 된다. 현재의 경우 ISP가 통신회사에서 특정사이트로의 접근을 막아놓고 있다. 그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려 특정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캐나다의 어떤 대학생이 북한관련 자료를 올려서 그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었던 예가 있다.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자=창작인과 소비자=대중'이라는 구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특정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통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통신이라는 것이 통신(communication)의 측면과 출판(Publishing)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출판 쪽에서 섹스 산업이나 포르노 산업에 많이 진출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상행위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과 표현의 자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표현의 자유는 정보사회에서 시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정치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문화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

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본은 어떤 행위가 타인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할 때이다. 개인적으로는 음란물이 여성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로 얘기가 되어야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성애를 그렸다. 성기가 노출되었다와 같은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권이나 청소년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런 개념부터 사회적으로 확립하고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업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가 어떠한 침해를 하는가라는 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 소위 말해서 음란물에 대해서는 검열을 해야 한다는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개의 통신하는 사람들은 통신공간은 특수하기 때문에 올드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모든 미디어는 같이 바라봐야 하고 서로 협조하고 연대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뉴미디어특성론에 근거한 투쟁은 지양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대하여야 한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가상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을 텐데 앞서 언급되었던 등급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특히 통신에 있어서는 등급제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기술적인 검열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의 전제는 등급제이다. 주체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국가기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가상공간에서는 등급제가 시행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다른 장르에서는 예술의 창작과 산업이 맞물리는데 가상공간에는 웬만한 큰 통신사업만 뿐 아니라 개인마다 홈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등급제를 가상공간에 적용시키게 되면 행위 자체를 등급제화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는 홈페이지 행위 자체를 차단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김 보 성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사무총장

강내회 교수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는 질의자에게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풍부함으로 다가와 인상적이었다. 먼저 현 국민인식에 있어 '문화예술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한 탄압의 실질적 강화'라는 현실은 논리적 모순 이상의 문제이며, 사상의 최종발현체로서의 예술적(사회적)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결국 사상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낸다는 우려에

**21세기 문화국가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이제 시민 스스로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 스스로 문화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한 억압된 사회분위기가 창의적으로 바뀔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96년 음비법 개정 전 가수 정태춘을 위시해서 여러 대중음악인들이 한 목소리로 자신의 '자기검열'에 대한 경험담을 토로한 적이 있다. 예술 창작에 앞서 새하얀 백지에 아무런 편견과 방해없이 자유롭게 예술혼을 담아내지 못하고, 억압된 사회적 검열장치(공론, 방송심의, 사회적 편견 등)를 피하기 위한 명령을 먼저 암송해야 하는 끔찍한 기억을 말이다. 그리고 그 후 '사전검열 철폐의 성과'라며 음비법 개정 결정에 환호를 보내고 기념공연까지 성대히 치렀던 대중음악인들은 철폐 이전에 많은 영화인들과 독립영화 관계자들의 항의와 시위를 벌였던 성과를 불과 단 한 명의 가수의 고군분투의 대가로 받은 대신 음비법 내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전에 비해 개악된 점에 항의와 우려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했던 기억도 갖고 있다. 이른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드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통제를 늘이려 하는 신보수주의'라는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문화전쟁에 대한 발제문의 지적은 위의 음악직영의 시안별 장르별 개별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초라한 승리(!)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국만화에 대한 사례발표와 탄압의 정도와 규제 근거의 치졸함은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히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다 떨어진 낚은 운동화'라는 노랫말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개작지시를 하는 수준 말이다. 또 음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95. 12. 7) 시행이 되기(96. 6. 7) 전에 이미 오래 전에 출판된 민중가요 노래책에 수록된 노랫말을 문제삼아 국보법 위반으로 출판사 편집인과 발행인(둘 다 노래운동가이다)을 구속(96. 2)시키기도 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현 탄압의 실체에 대한 공동인식에 대한 것과 향후 대응방식에 연관된 것이라 본다. '전선이 80년대처럼 단순하게 그어지지 않고 다양해진 가치관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지니게 되어 공세에 대한 방어조차 간단치는 않다. 구조적 분석에 걸맞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부터 개별 장르의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해결양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필자는 크게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커다란 골격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우선 제안한다.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소방법 등 바뀌어야 하는 복잡한 현행법체계는 일제 식민지배의 가장 고질적 병폐의 하나이다. 차체에 21세기 문화국가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나라의 골간을 정비하는 일에 이제 시민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이다. 아무리 좋은 법규와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국민 스스로의 문화적 자정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한 군사문화의 명령인 억압된 사회분위기가 창의적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다. 법체계에 대한 정비 외에도 우리 사회의 청각환경을 좌우하는 방송환경, 음악교육 제도, 음악 소비자(넓게는 문화수용자)의 소비태도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관심도 표현의 자유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모든 장르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적 활동으로 이 자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예술**



1-4

인권	
등록일	분류기호
	B7 47

보도기사 작성용 [草稿] 이므로  
간정문으로 轉載하지 마십시오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1996. 10. 4. 결정선고	인
1996. 10. 4. 원본영수	프로

사 건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91헌바10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 청 법 원 서울지방법원(93초145)

제청 신청인 강 헌

과천시 중앙동 76 주공아파트 1020동 101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김 형 태, 조 용 환

제청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92고단7586 영화법위반

청 구 인 1. 홍 기 선

서울 강서구 등촌동 575의 4 동아연립 102호

2. 유 인 택

서울 도봉구 수유5동 510의 14 동익연립 비동 201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

소원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89노6866 영화법위반

## 주 문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보도기사 작성용 [草稿] 이므로

결정문으로 轉載하지 마십시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3헌가13 사건

서울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피고인) 강헌에 대한 영화법위반 피고사건(92고단 7586)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3초145)에 따라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영화법위반 피고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인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993. 9. 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91헌바10 사건

청구인들은 그들이 공모하여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서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89노6866으로 사건 계속중, 위 법원에 법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90초544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1. 5. 7.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기사 작성용 [草稿] 이므로

직접 문으로 轉載하지 마십시오

제12조[심의]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③ 이하 생략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이미 제지되었다 그러나 영화진흥법은 제12조

제13조[심의기준] 사건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의 전제성을 갖추

-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가13 사건)
-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범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② 생략 유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한편, 심판의 대상과 관련이 되는 벌칙규정으로는 법 제32조 제5호가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심의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보도기사 작성용 [草稿] 이므로  
진정문으로 轉載하지 마십시오

1. 내지 4. (생략)

5.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 (1) 법 제13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한 공인윤리위원회(이하 "평론"이라

(2) 한편, 법은 1995. 12. 30. 법률 제5130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6. 7.

1.부터 시행된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그러나 영화진흥법은 제12조 및 제13조에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전 종전에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다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헌여부를 가리기로 한다.

2. 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93헌가13 사건)

(1) 영화도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인 하나이므로, 영화의 자유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심의제는 예술활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예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보도기사 작성용 [草稿] 이므로

관정문으로 轉載하지 마십시오

헌법 제22조 제1항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2) 법 제13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이라 한다)의 심의기준의 하나로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제3호)",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제4호)"를 들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의 하나인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에 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 제청신청인의 의견(93헌가13 사건)

(1) 영화상영의 자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으므로 그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사전통제도 모두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은 구법에 문화부장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① 우선 공륜의 구성면에서,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제정당시에는 문화부장관이었으나 그 뒤 1993. 3. 6. 법률 제4541호에 의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되었다, 이하 "문화체육부장관"이라 한다)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공륜은 검열기관에 해당하고,